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관계 내용이 없는 불필요한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함으로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관계 내용이 없는 불필요한 별지를 삭제(안 별지 제10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결과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결과 : 원안동의(개선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활안정자금 수혜가구 관리카드

1. 수혜가구 현황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 구 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득원						
직 업						

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

사 업 명	(신규사업, 기존사업확장)			지원일자	
사 업 비		지원금		자 부 담	
추진진도					

3. 융자금 수혜자 주소 이동상황

이동년월일	이 동 주 소 지	비 고(전화번호)

작성년월일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명 성명 (인)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